

의안검토보고

의안 번호	제166호		
건명	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증개정조례(안)		
제안(출)자	서초구청장	제안(출)년월일	2000.10. 6.
검토위원명	전문위원 김재근		

1. 검토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(200년 시행)으로 변경된 내용의 반영과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신설을 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(1) “납세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”를 “납세증명서”로 변경 (안 제6조의2)

(2)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변경 (안 제14조)

- 동위원회의 기능을(현행)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를 심의·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(변경)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·의결
-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

(3)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신설 (안 제14조의3)

-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함
-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

2. 전보결과

□ 현행지방세제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.

□ 주요내용은

- 법 제39조가 삭제되고, 법 제38조2항이 신설되었기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변경하고, 균거법 조문을 수정(안 제6조의2)
-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변경하여 지방세에 관한 의의신청을 심의·회결하도록 함. (안 제14조제1항)
- 지방세심의위원회조직 및 임기·자격등 운영에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, 동 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. (안 제14조제2항)
-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도록 하며, 동위원회의 조직·임기·자격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, 동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하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함. (안 제14조의3, 제1, 2항)

□ 경노의견

-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하면 “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, 과세객체, 과세표준, 세율, 기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이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”로 되어 있고,
- 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의 기본법인 지방세법이 1999. 12. 28 개정되었으며, 이어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세정 13400-369(2000. 4. 1)호로 자치구세 조례개정 지침이 통보되었고,
- 현행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3. 참고자료

□ 관계법령

- 지방세법 제38조제2항
-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
-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9조

〈 관계법령 〉

지방세법

第2條 (地方自治團體의課稅權) 地方自治團體는 이法에定하는 바에依하여地方稅로서
普通稅와目的稅를賦課徵收할수있다.

第3條 (地方稅의 賦課·徵收에 관한 條例) ①地方自治團體는 地方稅의 稅目, 課
稅容體, 課稅標準, 稅率 기타 賦課·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
는 이 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條例로써 하여야 한다. <改正 98·12·31>

②削除 <88·4·6>

③地方自治團體의長은 第1項의條例의施行에 根據하는節次其他그施行에 關하여必要한
事項을 規則으로定할수있다.

第55條 (納稅證明書의 제출등) ①納稅義務者 または 特別徵收義務者는 國稅徵收法의
規定에 의하여 國稅에 관한 納稅證明書를 치불하는 경우에는 地方稅에 관한 納
稅證明書를 同時에 제출하여야 한다. <改正 91·12·13, 99·12·28>

②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로부터 納稅證明書의 發給申請이 있는 때에는
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위임을 받은 公務員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
급하여야 한다. <新設 99·12·28>

第39條 削除 <99·12·28>

第72條 (請求對象) ①이 法에 의한 처분(申告納付 또는 修正申告納付를 한 경우에
는 그 申告納付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. 이하 이 節에서 같다)으
로서 違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權利
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者는 이 節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및 審查請求를 할
수 있다.

②나음 各號의 처분은 第1項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1. 이 節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또는 審查請求에 대한 처분. 다만, 異議申請에
대한 처분에 대하여 審查請求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
2. 稽稅犯處罰節次法에 의한 通告處分

3. 監查院法에 의하여 審查請求를 한 처분이나 그 審查請求에 대한 처분

4.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誤稅前適否審查의 請求에 대한 처분
(本條新設 97·8·30)

第73條(異議申請) ①異議申請은 다음과 같이 제출된다. ②자본이 있는 경우 일부(자본이 통계를 낸을 경우에는 그 통계를 받은 날)부터 90일이내에 大統領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나 사용률(비하여 道稅(道稅), 共同施設稅와 特別市稅, 廣域市稅는 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지외하다)에 있어서는 道知事에게, 市·郡稅(道稅, 共同施設稅와 特別市稅는 廣域市稅中 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지외한다)에 있어서는 市長, 郡守에게 异議申請을 하여야 한다. <改正 98. 12. 31>
②第70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前遞否審查를 거친 후에 課稅된 부분에 대하여 异議申請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規定에 의한 审查請求를 제출하는 경우 있다. 이 경우 審查請求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异議申請期間에 제출하여야 한다.

第77條 (審査請求) ①審査請求를 하고자 할 때에는 異議申請에 대한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道知事의決定에 대하여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, 市長·郡守의決定에 대하여는 道知事 또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 각각 審査請求를 하여야 한다. (改正 68. 12. 31)

②第77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期間내에 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決定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부터 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.

第77條(決定号) ① 第73條 및 第74條의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行政自治 ③ 日이내 地方稅審議委員會의 議決에 ④ 申請人 또는 請求人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決定書를 송달하여야 한다. (改 正 98. 12. 31)	規定에 의한 異异议申請 또는 審查請求를 받 部長官은 그 申請·請求를 받은 날부터 60 따라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決定을 하 且 申請人 또는 請求人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決定書를 송달하여야 한다. (改 正 98. 12. 31)
1. 申請·請求期間이 경과하였거나 2. 申請·請求를 却下하는 決定	補正期間내에 필요한 补正을 하지 아니한 때 는 그 申請·請求를棄却하는 決定
2. 異議申請 또는 審查請求가 이유 없 3. 異議申請 또는 審查請求가 이유 있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欽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엿은 ④ 地方稅審議委員會의 組織과 職務 ⑤ 在路新法 97. 8. 301	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申請·請求를棄 4. 申請·請求의 目의이 ① 처분의 取消·更正 또는 諸요한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欽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엿은 ④ 地方稅審議委員會의 組織과 職務 ⑤ 在路新法 97. 8. 301
	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申請·請求의 目의이 5. 欽處分의 決定 6. 欽處分廳을 基準한다. 7. 欽處分廳은 決定의 위치에 따라 8.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지방세법시행령

제58조 (지방세심의위원회) ①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98.7.16, 99.12.31>

②각자 <99.12.31>

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99.12.31>

④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⑤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서비스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98.7.16>

⑥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98.7.16>

(본조신설 97.10.1)

제59조 (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의결에 필요한 의안 및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98.7.16>

②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·청구인·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투표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위원회는 그 의안의 심의·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98.7.16>

(본조신설 97.10.1)

지방세법시행령

제81조의2 (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) ①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이 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(본조신설 2000. 7. 29.)

지방세법시행규칙

제39조 (지방세심의위원회의 주체)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 (개정 99. 12. 31.)

②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지방세기심의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 (개정 98. 7. 23, 99. 12. 31.)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. (개정 98. 7. 23.)

1.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(시·군의 경우에는 5급이상)의 공무원

2. 판사·검사·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

3.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

4.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

5. 대학에서 영률학·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

6.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자

(본조신설 97. 9. 4.)